



정책건의

# 주유소내 충전소병설 반대

한국LP가스공업협회

행정자치부가 주유소내 충전소병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, 우리회는 행자부와 청와대·규제개혁위원회·법제처 등에 동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.

## 건의요지

행정자치부의 “주유소내 CNG 또는 LPG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허용”이 담긴 「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」 입법예고(2000. 11.26, 안 제246조의 3 신설) 조항은 ▲안전저해 ▲법의 형평성 문제 ▲집단민원유발 등 제반 부작용이 많으므로 동 조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함

## 반대사유

### ■ 안전저해

- 폭발위험성을 갖는 CNG 및 LPG를 인화성 기체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병설함은 위험의 집중으로 안전사고 배가 요인이 됨.
- 기존 주유소의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병설시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임.

### ■ 법의 형평 및 체계상의 문제

-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의 방화담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현행 소방기술에관한규칙 제 240조만 수정하면 가능하며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음.
- 주유소에 인접한 충전소의 소방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가스관계법에 규정하면 될 것이며 소방법규에서 별도의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.

### ■ 이중 규제

- 가스관계법의 설치허가의 소방법규에 의한 설치허가로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모순도 있음.
- 주유소와 충전소를 포괄하는 부지의 주위

에 방화담을 설치토록 한다는 것은 별도의 추가규제가 됨.

- 가스관계법과 소방법규로 동시에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혼란과 함께 과다규제로 인식될 것임.

### ■ 집단민원 유발

- 현재 대도시지역의 충전소 신설이 어려운 것은 허가요인이 엄격해서 라기보다 폭발위험성과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큰 요인인바, 주유소내 병설시 주유소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연쇄적으로 쇄도할 것임.
- 행자부 의견(2000. 1.8)대로 방화담을 설치한다고 하여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충전소의 경우 주택가와 법정거리보다 몇배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임.
- 특히 대부분의 주유소는 주택이나 상가 등 사람이 밀집된 곳에 위치한 곳이 많으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음.

### ■ 협회 의견

- 주유소내 충전소 병설 특례조항 “삭제”